**프리랜서 용역계약서**

|  |
| --- |
| **주식회사 에이치닷(이하 “갑”)과 (이하 “을”)은 용역내용 1, 용역내용 2, 용역내용 3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  | **제1조 【목적】**“갑”은 제2조 소정의 용역을 “을”에게 위탁하고자 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고자 하는 바,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용역 내용 1**
2. **용역 내용 2**
3. **용역 내용 3**

**제3조 【용역수행기간】**“을”의 용역수행기간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0개월 간**으로 한다.**제4조 【용역대금】**1. “갑”은 “을”에게 매월 용역대금 **0,000,000원**을 지급한다.
2. “갑”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전항의 용역대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제세 공과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3. 제1항의 용역대금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세금계산서와의 상환을 조건으로 부가세를 별도 지급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갑”은 전조의 산정된 매월 용역대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제6조 【용역수행】**1.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의 용역수행장소 및 업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갑”이 장소를 지정한 경우, “을”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기기의 제공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의 근로자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제7조 【업무협조】**1. “갑”은 용역수행 중 언제라도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완전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을”로 하여금 용역수행의 경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3. “갑”은 “을”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와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검수】**1. “을”은 용역수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완료된 용역수행의 결과물을 “갑”에게 제출하고, 최종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2. “갑”의 검수 결과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나 불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갑”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확인을 하여야 한다.
3. “갑”의 검수 결과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나 불비가 존재하는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 보완 후 재검수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본 조에 따른 검수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5조에 따른 용역대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본 조에서 정한 “을”의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9조 【계약의 효력】**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본 계약은 쌍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거나, 법률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전항에 불구하고, 본 계약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예정한 조항은 각 조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갑”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을”은 본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해제】**다음 각호의 경우 “갑”은 “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을”이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3. “을”이 제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4. “을”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을”이 제10조에 위반한 경우

**제12조 【계약해제의 효과】**1.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쌍방은 각각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2. 전항의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약해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일방은 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3조 【지적 재산권】**1. “을”의 용역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에 관한 지적 재산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2. “을”은 용역수행으로 얻어진 결과물 일체를 “갑”에게 이전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으로 이를 보유하지 않으며,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비밀유지】**쌍방은 본 계약 하에 상호 취득하게 되는 모든 기술적, 사업적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15조 【관할법원】**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20 년 월 일 |
|  | “갑” **주식회사 에이치닷**사 업 자 등 록 번 호:대 표 이 사: (인) |
| “을”  주 소:주 민 등 록 번 호:성 명:                         (인) |